

#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및제출자 : 1997. 5. 3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7. 6. 2

다. 심 사 경 과 : 제59회사하구의회(임사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97. 6.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건축과장 박 정 상)

### 가. 제안이유

건축법개정(1995. 12. 30. 법률제5139호)과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전문개정(1997. 2. 21)됨에 따라 현행 각 자치구별 적용하는 건축허가기준을 일치시키고 광역시내 건축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건축주가 관리하여야 할 공사현장관리를 건축사가 건축주의 추천을 받아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공사현장을 대리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3조)
- 종전 건축위원회구성시 건축등에 관련한 학식, 경험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토록하던 것을 건축과 관련한 전문분야(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해당 분야별 경험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토록 함.(안 제5조)
- 건축법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 사전심의결정” 규정이 폐지(1995. 1. 5 삭제)됨에 따라 종전 건축허가신청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건축허가시 각 자치구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97. 2. 21 전문개정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의거 종전 조례규정중 건축허가 수수료, 견폐율, 용적율,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안의 건축과 관련한 규정등(26개조항)은 부산시 조례에 흡수통합되어 이를 폐지함(흡수통합근거 : 건축법 제5조의 3)
- 건축법 제2조 제17호의 현장관리인 설치규정과 같은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설치규정이 신설(1995. 1. 5)됨에 따라 현장관리인의 범위, 건물색채, 건축지도원 지정해제, 건축높이제한,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등 (16개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제14조, 제27조, 제31조, 제17조내지제 21조, 제34조내지제40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건축법 개정 ('95. 1. 5 및 '95. 12. 3)과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전문개정('97. 2. 21)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자치구·군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특히 현행 자치구·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허가 기준을 광역시 조례로 흡수 통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그 주요 골격인 바 당초 11장 54조 부칙에서 10장 42조 부칙으로 개정되는 것임.
-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5조의 3(통일성의 유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별 조례의 행위기준 조항이 삭제되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로 흡수되었고 소규모 건축물(주거용 660㎡ 이하, 비주거용 494㎡ 이하)에 대한 현장관리인 지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 법령개정에 따른 필연적인 개정사유가 발생되었고 자치구별 본 개정(안)과 동일, 유사하므로 사안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감안, 원안 통과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